



KOREA P&I CLUB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2018. No.79

(발행일 : 2018.12.31)

MAILING
SERVICE

KP&I Legal News

<http://www.kpiclub.or.kr>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 길 17 TEL.02-739-9755 FAX.02-739-9759

이번호에는 2016년 Legal News 12월호(56호)에 소개해 드렸던 표제 이슈에 관한 영국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대법원의 판결(2018.12.5)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국 대법원은 항소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운송인은 Hague Rules상의 면책 list에 열거된 원인에 의해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입증할 책임 뿐 아니라, 화물의 취급(선적,적부, 보관, 양하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도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화주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보상2팀 홍진택 부장 (3701-6805, jthong@kpiclub.or.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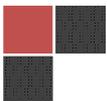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 청구액, 배경 사실 등은 56 호 Legal New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화물 취급에 관한 주의 의무(Hague Rules Article 3 Rule 2의 규정 “...the carrier shall properly and carefully load, handle, stow, carry, care for and discharge the goods carried”)를 다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운송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운송인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화주측이 입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화물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상태와는 다르게 손상된 상태로 양하되었으므로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되는 반면,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내벽에 둘러진 Kraft paper 가 몇 겹이었는지 또는 Kraft paper 의 중량은 얼마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콜롬비아 선적 커피콩 화물의 습손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 중량의 Kraft paper 가 몇 겹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송인이 추정된 과실을 부인(disprove the negligence)해내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화주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 컨테이너 화물은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로 컨테이너내에 화물을 적입할 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proloading survey report 에 첨부된 선적 서류 및 사진)를 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여 운송인이 컨테이너 내벽의 Kraft paper 작업을 2012년 당시 업계에서 인정된 관행(accepted industry practice)에 따라 진행했다고 보았고, 이와 관련된 작업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화주측에 있는데, 화주가 그러한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며 운송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1심 법원 판사가 확정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복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Kraft paper 작업과 관련하여 널리 인정된 업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1심 법원 판사는 몇 겹의 Kraft paper 가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중량의 Kraft paper 가 사용되었는지(평방 미터당 80gram(80gsm) 이상의 종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됨) 확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사진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80gsm의 종이 두 겹이 사용되었으므로 당시의 업계 관행에 따랐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인 2심 법원이 1심 법원 판사의 채증법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1심 법원의 사실 확정을 번복하고 같은 증거를 달리 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Hague Rules의 Article III Rule 2는 운송인에게 추정된 과실을 부인(disprove negligence)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Article III Rule 2는 명시적으로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IV”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Article IV의 면책조항 중에는 그러한 면책조항이 없다면 Article III Rule 2의 위반으로 간주되었을 운송인의 과실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 면책조항의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관련 사실들이 Article IV의 면책조항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운송인이 해야 하는 것은 확립된 원칙이므로, 같은 관련 사실들로 Article III Rule 2의 위반을 입증할 책임을 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운송인이 Article III Rule 2에 규정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손상이 Article IV Rule 2의 면책조항에 따라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상 사건에서 운송인은 콜롬비아산 커피콩 화물이 더운 지역에서 추운 지역으로 운송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로로 인한 손상(condensation damage)을 견뎌내지 못한 것은 화물의 고유한 특성(inherent vice) 탓이라는 입증과 더불어, 그러한 화물의 습손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충분한 중량과 두께의 Kraft paper를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

